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최혁진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의견	4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4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9
2. 조문별 검토의견	11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1
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3
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5조 및 제10조)	18
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계약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3
마.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 및 보상(안 제14조 및 제15조)	27
바. 보칙(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28
사. 부칙	3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0.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 · 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성과기반 사업구조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제고 및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함(안 제8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정된 사회성과보

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를 둔(안 제10조).

아.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social value)를 창출하면 정부가 사후에 사회적 성과를 구매하는 사업을 의미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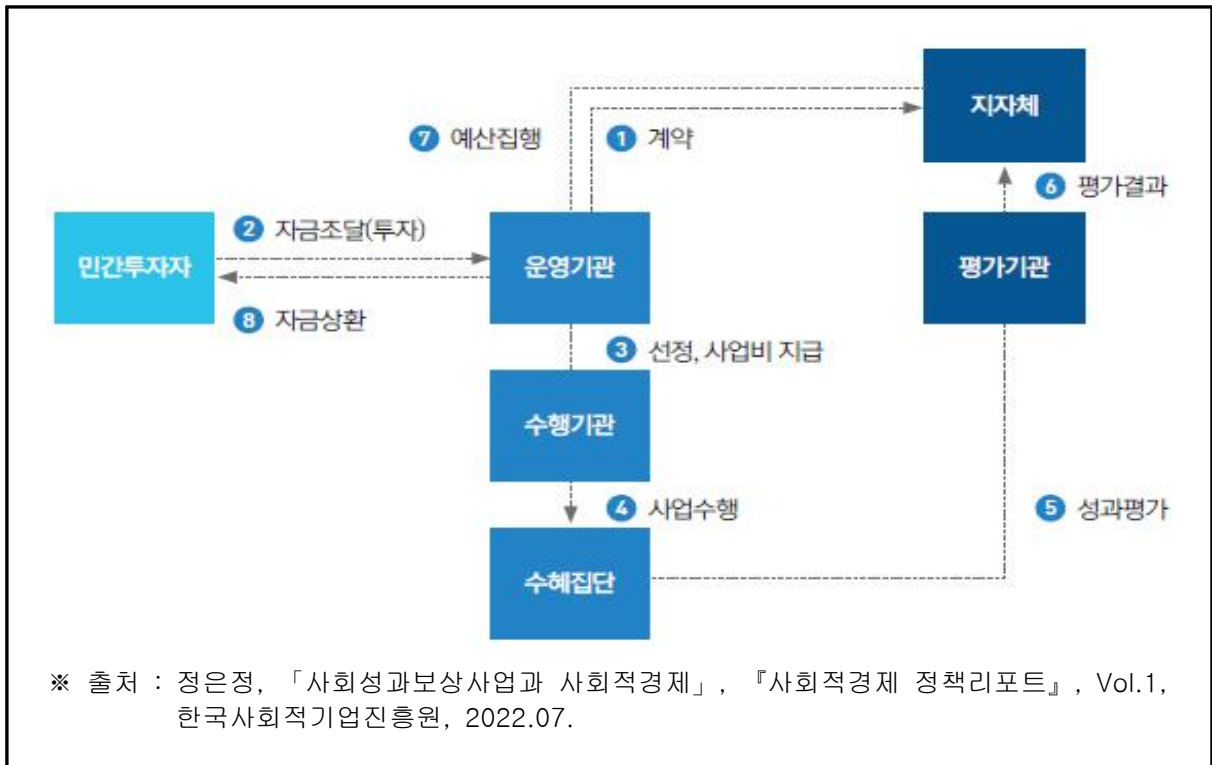
이는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국가·지방정부 부채 증가, 시민참여 확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일반적인 정책과정에서 ‘예산 편성 → 예산 집행 → 사업 수행 → 성과 및 환류’의 절차를 거쳐 실제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것과 달리,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계약 체결 → 사업 수행 → 성과 → 예산 집행’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실제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에만 예산이 집행되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안내서」, 2017.10.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



구체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①지방자치단체(성과보상자)는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②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계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③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집행을 관리하고,

④사업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을 통해 수혜집단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⑤독립된 평가기관이 사업성적을 평가 후 ⑥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성과평가를 전달하고,

⑦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⑧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를 상환하는 구조로 진행됨.

2016년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국민 등의 참여를 활성화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지난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에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려는 내용의 법률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사회성과보상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구분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제20대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2019491	임기만료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2019535	임기만료폐기	정무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2019528	임기만료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2022326	임기만료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제21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2101157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2102858	임기만료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의원	2110388	임기만료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성과보상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광역시·도	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도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기초	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군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2026년 1월 현재 9개 시·도 및 11개 시·군·구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이나 사회성과 측정·보상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근거 법령이 부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민간 참여자들이 등장하여 사회성과보상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²⁾

이에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계약·사업추진·평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성과보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정은정, 「사회적경제 정책리포트」, Vol.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여, 본칙 2장 총 18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조정 요구 등
	제8조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 발굴 등
	제9조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제10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제11조	운영기관의 선정
	제12조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4조	사회성과의 평가
	제15조	사회성과보상
	제16조	국회 보고 등
	제17조	지도·감독
	제1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기

다만, 구성체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본칙을 ‘제1장 총칙’과 ‘제2장 종합계획 및 사업추진체계’의 2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통상 본칙 조문의 수가 30조 이상으로 많은 경우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복수 개의 ‘장’을 나누어 규정하도록 하므로³⁾ 별도의 장을 두지 않는 방안이나

제2장에서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외에 사업의 절차(운영기관 선정, 계약 체결·변경·해지, 성과평가, 성과보상)나 보칙(국회 보고, 지도·감독, 공무원 의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4개의 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p.80.

2. 조문별 검토의견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안은 제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여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 촉진 및 사회 문제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와 국민의 복리 증진으로 함(안 제1조). 또한 “사회성과”,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계약”,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제고 및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돌봄,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거나 또는 사회적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부문이 재원을 조달하여 복지, 돌봄,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사업비를 보전하고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 간에 사회성과보상 조건을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

제 정 안

한다.

5. “운영기관”이란 제10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운영하기 위하여 선정된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2조) 제정안은 사회성과,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계약,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이 중 “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운영’하기 위해 선정된 민간단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회성과보상계약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며 성과 달성 시 ‘민간투자자에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수행기관’과 혼동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 요구(안 제6조 및 제7조),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의 발굴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안 제8조), 사업추진계획 수립(안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장 종합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보상사업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제 정 안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개발 및 추진절차
2. 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4. 사회성과보상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국민참여
5.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조정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추진상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제 정 안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 발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주민 또는 민간부문의 제안 등을 통하여 발굴하여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2.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은 제10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된다.

④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 발굴,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 및 타당성 분석의 방법 또는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의 조정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행정안전부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전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 분야 또는 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에 필요한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구조를 의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 선정, 사업추진계획 수립, 운영기관의 선정,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 평가기관 선정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시행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책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게 관련 권한·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은 사회문제를 예방·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객관적·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민간 제안 등을 통해 발굴하여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으로 선정하고,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선정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운영기관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특성을 법률에 반영하고, 후보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효율성·효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5조 및 제 10조)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와 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안 제5조)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안 제10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①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①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2.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 및 제10조) 제정안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선정,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을 유도하여 행정 내부의 통일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⁴⁾

동법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⁵⁾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며,⁶⁾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새로운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따라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는 방안,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방안,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두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활용을 규정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치단체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와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계약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계약 절차로서 운영기관의 선정,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운영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의 자료를 검토·평가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표 및 기간 2. 사업비 및 산출내역 3.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4.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정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사회성과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회성과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 제11조)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공모 절차를 두고, 운영기관으로 응모하려는 경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가 운영계획서를 검토·평가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운영계획서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 수행기간, 예상 소요액, 목표 등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제정안은 운영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내용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표·기간,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업비·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시기,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와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상호 합치에 의한 의사 변경, 계약 미이행, 불법·부당행위 등 사회성과보상계약을 변경·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변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추후 ‘사회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의

내용에 ‘사회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에 사업수행기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약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제목을 ‘계약의 변경 및 해지’로 하고 본문에 ‘보상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문구를 “사회성과보상계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 및 보상(안 제14조 및 제15조)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 평가기관의 선정 절차와 평가기관의 평가시 공정성·객관성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제 정 안
제14조(사회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 및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성과보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및 제15조)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성과보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 보칙(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안 제16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안 제17조),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안 제18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6조(국회 보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등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영기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16조) 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국회·지방의회의 감독·통제·

견제를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추진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선정하여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 부칙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안 부칙 제1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최초 종합계획의 기간을 설정(안 부칙 제2조)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정안 부칙은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종합계획의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데, 이는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해석상 어려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350